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 관리 및 지원 제도 신설〉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79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 관리 및 지원 제도 신설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29.
3. 회 부 일 : 2025.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현행법령상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생산자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어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성 농산물에 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 관리 및 지원 제도 신설

개정안은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능성 농산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기능성 농산물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능성 농산물 관련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5호·제16호, 제4조제11호, 제5조의3, 제29조제1항제3호, 제30조의3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14. (현행과 같음) 15. “기능성”이란 질병에 걸리지 <u>않은 사람(청소년, 임산부 및 질병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기능성 관여 성분에 의한 건강 유지 및 증진 등 특정의 보건 목적이 기대될 수 있음이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식품의 유용한 특성을 말한다.</u> 16. “기능성 농산물”이란 농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낮게 함유된 기능성 관여 성분을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을 통해 함유하게 하거나 그 함유량
<u><신설></u>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제4조(심의회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u>11. · 12. (생 략)</u> <u><신 설></u>	<u>을 높인 농산물을 말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회회의 직무)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기능성 농산물 및 그 표시에 관한 사항</u> <u>12. · 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u> <u>제5조의3(기능성 농산물 표시기준 등)</u> <u>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u> <u>②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기능성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용기·포장에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는 그 기능성을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 또는 광고된 농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u>

현 행	개 정 안
	<u>당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u>⑤ 제4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u>⑦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의 실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⑧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의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u><신설></u>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u>기능성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기능성 농산물로 표시·광고하거나 기능성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u>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u><신설></u>	제30조의3(기능성 농산물의 사후관리)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u> 1. <u>기능성 농산물 표시 기준 및 방법의 적합성 등의 조사</u> 2. <u>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 등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u> 3. <u>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시료 수거</u> 4. <u>농산물의 기능성 관여 성분 함량의 시험·검사</u> 5. <u>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의 실증에 필요한 조사·연구</u> ② <u>제1항에 따른 조사, 열람·복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u>

현행	개정안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생략) <신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기능성 표시를 한 농산물이 표시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표시 또는 광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 등을 위한 자금 지원 2. 기능성 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 지원 3. 기능성 농산물 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 관련 실태 조사 제119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29조제1항제3호를 기능성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기능성

현 행	개 정 안
2. ~ 9. (생 략)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생 략) <신 설> 2. ~ 9. (생 략) 9의2. (생 략) 10. ~ 13. (생 략)	<u>농산물로 표시·광고하거나 기능성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한 자</u> 2. ~ 9. (현행과 같음) 제120조(벌칙) ----- -----. 1. <u>제5조의3제6항에 따른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u>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u>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u> 4. ~ 11.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2. (현행 제9호의2와 같음) 13. ~ 16.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에서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가지는 ‘기능성’과,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검사 및 영업 등의 사항을 규정함.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

한편,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식품표시광고법상 건강기능식품 표시 관련 규정 】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특수영양식품(영아·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

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한 식품을 말한다)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임산부·수유부·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광고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판매·제조·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같은 영 제2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検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検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11. 27. 확인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규제 대상인 식품을 ‘모든 음식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산물 역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농산물에도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또는 기능성 관련 표시·광고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와 그 시행령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금지의 예외로서는 시행령 별표 1에서 ① 제3호 각 목에 해당하거나 ② 비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함.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²⁾ 식품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현재 자연상태 농산물의 경우 보건 용도의 효과가 기대되더라도 법률의 정의상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없으며,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³⁾에만 해당하게 됨.

이에 따라 자연상태 농산물에 기능성 관련 표시 또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예외에 해당할 필요가 있으나, ① 별표 1 제3호 각 목의 경우 자연상태 농산물이 아니라 제품에 함유된 원재료로서의 표시 또는 광고만이 가능할 뿐이고,

② 별표 1 비고의 경우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는 등의 가공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위생상 위해가 없으며 관능검사⁴⁾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여, 자연상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위생상 위해가 없는 단순 가공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법은 제조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로 정의하여 제조의 개념에 ‘가공’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률 문언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는 등의 단순가공이 건강기능식품법상의 제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3)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과 관련된 기능성 원료로서 인삼, 홍삼, 프로폴리스 추출물, 귀리식이섬유, 마늘 등을 고시하고 있음

4) 일반대중에 대한 식품의 보급가치, 상품성, 수용성 등을 판정하는데 이용되며, 주로 다수의 판정인들이 모여 식품의 맛을 평가·판정하는 것(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관련 누리집인 “식품안전나라”⁵⁾에서 자연상태 농용의 질병예방 효능 관련 광고에 대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따른 경우라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 자연상태 농산물의 표시·광고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사례 】

질의주제	사례
자연상태 농용의 질병예방 효능 광고	 The screenshot shows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website. The main heading is 'Food 식품안전나라'. Below it, there's a search bar and a navigation menu. The content area is titled '분류 부당 표시광고' (Classification of Unfair Labeling/Advertising). Under '제목' (Subject), it says '[지자체 질의내용] 자연상태 식품의 질병예방 효능 광고 가능 여부' ([Local Government Inquiry Content] Is it possible to advertise the disease prevention efficacy of natural state food products?). The '질의내용' (Inquiry Content) section contains a question about whether it's permissible to advertise the disease prevention efficacy of natural state food products, citing specific regulations. The '답변내용' (Answer Content) section provides a detailed response, stating that such advertising is permissible if it meets certain criteria, including not making exaggerated claims and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The '근거규정' (Basis of Regulation) is cited as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Article 8 of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he '첨부파일' (Attachments) section is empty.
	※입력일자 : 2025.06.25 답변요지: 해당 자연상태 식품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른 경우라면, 부당한 광고로 판단되지 않음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식품표시광고 FAQ, 2025. 12. 5. 확인

5) <https://www.foodsafetykorea.go.kr>

다만, 이와 같은 예외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조건 역시 복잡하며 최소한의 단순 가공을 요구함에 따라, 자연상태 농산물에 기능성 관련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고,

사례와 같이 개별 건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석을 받지 않는 한, 농업인이 스스로 기능성 표시·광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⁶⁾을 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연상태 농산물에 대하여는 원활한 기능성 관련 표시·광고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하여, 현재 자연상태 농산물에도 기능성 관련 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등의 경우와 달리,⁷⁾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 농산물에 관하여 법·제도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매출액 기준으로 2024년 약 4조원 규모에 해당하고, 특히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조원 이상이 증가하여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보건 목적의 효과를 지니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도 활용되는 기능성 농산물에 대하여도 법·제도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並科)할 수 있다.

7) 박성진 등,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p. 43.

【 2019년 · 2024년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 국내판매액 · 수출액 규모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A)	2024년(B)	증가분(B-A)	
			증가액	증가율
매출액	2,950,787 (100.0)	4,013,141 (100.0)	1,062,354	36.0
국내판매액	2,808,103 (95.2)	3,632,972 (90.5)	824,870	29.4
수출액	142,684 (4.8)	380,169 (9.5)	237,485	166.4

※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재가공

이에 개정안은 기능성 농산물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의한 표시 기준 및 실증 절차를 마련하며, 기능성 농산물 관련 지원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농산물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기능성 농산물 산업을 장려하고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능성 농산물의 표시·광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사항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 어느 기관의 소관 사무⁸⁾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8)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기관이므로, 어느 기관의 소관 사무인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역시 달라질 것임

특히, 기능성 농산물이 인체에 대한 보건 목적으로 섭취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능성 농산물의 관리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으로 할 필요성⁹⁾이 제기될 수도 있음.

또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기능성 표시·광고제에 대하여 ① 자연상태의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② 그 외 제조·가공된 식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소관하게 되어, 통합적인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식품표시광고법 제3조에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식품표시광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점,¹⁰⁾ 보건 목적 효과에 대한 기능성 농산물의 표시는 우수관리인증(GAP) 등 농산물의 품질 관련 표시와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이 아닌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하여 규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실증 및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식품표시광고법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9) 「정부조직법」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1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자구정리 사항¹¹⁾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기능성’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미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기능성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기능성 정의를 인용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른 기능성 농산물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식품에 해당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식품표시광고법 및 건강기능식품법과의 관계를 엄밀하게 정리하여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개정안은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을 통해 기능성 관여 성분을 함유하게 하거나 그 함유량을 높일 것’을 기능성 농산물의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본래 기능성 관여 성분을 함유하지만 품종 육성·개발 또는 생산방법의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산물은 기능성 농산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에 따른 기능성 농산물의 표시, 실증 및 사후관리 등은 식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므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의 협의 등 의견반영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11) 안 제119조제1호의3 중 ‘제29조제1항제3호를 기능성 농산물이 아닌’은 오기로 보이므로,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기능성 농산물이 아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6